

광명시 소비자 보호 조례

제정	2000.	1.	7	조례 제1173호
개정	2003.	11.	18	조례 제1323호(행정기구설치조례)
	2007.	3.	28	조례 제1515호
	2008.	6.	16	조례 제1588호(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2008.	9.	24	조례 제1608호(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2010.	11.	25	조례 제1731호(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2011.	4.	15	조례 제1766호(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일부개정	2011.	8.	9	조례 제1786호(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2012.	8.	8	조례 제1862호(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2013.	8.	1	조례 제1933호(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2014.	8.	14	조례 제2005호(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2016.	9.	26	조례 제2196호(인용조항 일괄정비를 위한 광명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일부개정	2018.	7.	31	조례 제2372호(조례 용어순화 등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	2018.	8.	30	조례 제2403호(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2019.	6.	25	조례 제2492호(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	2021.	6.	10	조례 제2749호(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2025.	10.	2	조례 제3289호(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비자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와 사업자의 의무 그리고 소비자와 소비자단체의 역할을 규정하고, 소비자보호 시책의 추진을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 3. 28, 2008. 6. 16, 2011. 4. 15>

1. “사업자”라 함은 시 관내에서 물품을 제조(가공 및 포장)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 반입 ·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2. “소비자”라 함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및 용역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최종적으로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와 농업과 축산업 그리고 어업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제공된 물품을 원재료(중간재를 포함한다) 및 자본재로 사용

하는 자를 제외한다.

3. “소비자단체”라 함은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 내지 증진하기 위하여 소비자가 자발적으로 조직한 단체로써 「소비자기본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제3조(소비자의 기본적 권리) 소비자는 모든 물품 및 용역에 대한 소비생활에 있어 스스로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권리를 향유한다.

1. 모든 물품 및 용역으로 인한 생명·신체 및 재산상의 위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2. 물품 및 용역을 선택함에 있어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3. 물품 및 용역을 사용 또는 이용함에 있어서 거래의 상대방·구입장소·가격·거래조건 등을 자유로이 선택할 권리
4. 소비생활에 영향을 주는 시정시책이나 사업자의 사업활동 등에 대하여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
5. 물품 및 용역의 사용 또는 이용으로 인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신속·공정한 절차에 의하여 적절한 피해구제 및 보상을 받을 권리
6.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
7. 소비자 스스로의 권익을 옹호하기 위하여 단체를 조직하고 이를 통하여 활동할 수 있는 권리

제4조(소비자의 역할) ① 소비자는 스스로의 안전과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고, 민주적인 사고와 합리적인 행동으로 자신의 역할을 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소비자는 건전한 소비활동을 실천하고, 불량식품 및 불공정거래행위 등의 근절과 소비자 만족위주의 제품생산 및 경영실천을 유도하여야 한다.

③ 소비자는 반환경적인 행위와 상품을 배척함으로써 사업자로 하여금 환경친화적 상품공급에 힘쓰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소비자의 권익보호

제5조(위해방지) ① 시장은 소비자의 안전 또는 이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물품을 수거하여 국·공립시험 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하고, 소비자에게 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소비자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상의 안전에 현저한 위해를 끼쳤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 또는 용역이 있을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판단자료의 제출과 소명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의거 소비자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상의 안전에 현저한 위해를 끼쳤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수거·파기 또는 판매 금지를 명할 것을 소관 주무관청 등에 요청하여야 한다.

제6조(시민생활의 안정대책) ① 시장은 주민의 기본 생활필수품으로 생활안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에 대하여 가격 및 수급상황 등의 정보를 수집하고, 이의 안정을 도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가격 등의 정보를 관계기관·단체·소비자 등에게 제공하고,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주민생활 안정을 위한 제1항 및 제2항의 물가정보수집·제공을 위하여 유급물가모니터제를 운영할 수 있으며, 그 운영을 소비자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생활물자에 대한 조치) 시장은 급격한 가격폭등 등으로 기본생활물품이 부족하거나 부족할 우려가 있어 주민의 생활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최고가격의 지정 및 같은 법 제6조에 의한 긴급수급조정 조치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7. 3. 28, 2008. 6. 16>

제8조(공정거래질서의 확립) 시장은 관계부서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소비자의 안전과 권익보호를 위하여 사업자에 대한 지도단속 및 감독활동을 꾸준히 전개하는 등 공정한 상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소비자보호교육) 시장은 소비자가 건전하고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상품에 관한 지식의 보급 및 정보의 제공 등 계몽활동과 교육 등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3장 소비자단체의 육성지원

제10조(소비자보호교육) ① 소비자단체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1. 시에 대한 소비자보호시책에 관한 건의
 2. 물품 또는 용역의 거래조건이나 거래방법에 대한 조사
 3. 소비자문제에 관한 조사·연구
 4. 소비자의 교육·계몽·캠페인
 5. 소비자피해 및 불만처리를 위한 상담·정보제공·당사자간의 합의 권고등
- ② 소비자단체는 업무상 알게된 정보를 소비자보호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제11조(소비자상담실의 설치 운영) ① 시장은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적절한 보상과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시 또는 소비자단체에 소비자상담실을 설치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소비자 상담실을 설치 운영하는 때에는 1인이내의 유급 상담원을 둘 수 있으며 유급상담원은 시장이 위촉하고 그 보수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소비자단체의 육성지원) ① 시장은 소비자단체 등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 7. 31>

② 제1항의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기준 및 절차·방법 등은 「광명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07. 3. 28, 2016. 9. 26>

제13조(시험·검사 의뢰 및 지원등) 소비자단체가 소비자피해구제를 위하여 국·공립 시험검사기관이나 한국소비자원 또는 도에서 지정한 시험·검사기관에 관계물품의 시험·검사를 의뢰할 경우 시장은 시험·검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 6. 16>

제4장 사업자의 의무

제14조(위해물품의 제공방지) ① 사업자는 「소비자기본법」 제8조제1항에 의하여 국가가 정한 기준에 위반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재산 상의 위해 또는 손해를 끼치

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상품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7. 3. 28, 2008. 6. 16>

② 사업자는 취급상품 등에 있어 소비자의 안전을 위하여 위해의 방지, 품질 및 기술의 향상, 기타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위해물품이 발생한 때에는 즉시 이를 공표하고 그에 따른 해당 상품의 회수, 제조·판매 등의 중지, 피해자에 대한 보상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조(상품의 표시) 사업자는 소비자의 올바른 선택과 소비생활을 위하여 관계규정에 의한 상품의 인체·환경에 미치는 영향·성분·성능·가격·용도·사용방법·제조연월일·유효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적정하게 표시하여 소비자의 안전과 이익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거래조건의 명시와 설명) 사업자는 상품판매나 서비스의 판매와 제공에 있어 거래조건을 명확히 하고, 그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소비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7조(계량의 적정화) ① 사업자는 상품 등의 공급에 있어 소비자의 불이익을 초래하는 부당계량행위나 불량계량기의 사용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시장은 소비자가 제1항의 불법·부당한 행위로 인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계량의 적정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포장 및 규격의 적정화) 사업자는 관계규정에 의한 포장 및 규격을 준수하여야 하며, 상품의 내용을 과장하거나 환경오염을 초래하는 과대포장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9조(허위·과장광고 및 선전의 제한) 사업자는 「소비자기본법」 제11조에 의한 광고의 기준에 위반하여 상품의 내용과 성능에 관한 허위광고나 선전, 그리고 소비자가 오인을 유발할 수 있는 과장된 광고나 선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7. 3. 28, 2008. 6. 16>

제5장 소비자의 피해구제

제20조(소비자피해구제 신청과 그 처리) ① 소비자가 물품이나 용역의 가격·품질·

안전성·표시·거래조건 등의 하자나 사업자의 법령 위반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시 또는 소비자단체에 서신·방문·전화·전신·기타 통신 등의 방법으로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소비자의 피해구제 신청을 접수한 시 또는 소비자단체는 해당 사업자에 대하여 이를 통보하고, 합의를 통한 교환·환불·시정·해약 등의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제21조(자료의 검사·제출요구) ① 시장은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과 제20조제1항에 의한 소비자피해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자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사실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소비자피해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공립 시험검사기관이나 한국소비자원 또는 도에서 지정한 시험검사기관에 관계물품에 대한 시험·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08. 6. 16>

제22조(소비자피해구제 처리요령 및 절차) 신속하고 공정한 소비자피해구제를 위한 처리요령 및 절차에 관한 규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3조(소비자피해 처리기한) 시장은 소비자피해구제 요청을 받은 때에는 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에 그 처리상황을 소비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30일이내에 처리를 종결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한내에 처리를 완료할 수 없어 처리기한을 연기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와 기한을 명시하여 피해구제의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4조(피해구제처리의 중지) 소비자피해구제 신청을 받은 시 또는 소비자단체는 소비자피해구제가 접수된 것 중 당사자간 일방이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이의 처리를 중지하여야 한다.

제25조(소비자피해조정) ① 시장은 소비자의 피해구제신청중 사실의 진위여부에 관한 확인이 곤란한 경우와 전국에 걸친 집단적이거나 다발적인 사항, 그리고 사업자나 소비자의 일방이 합의 권고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 6. 16>

② 소비자단체는 소비자와 사업자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소비자를 대리

하여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26조(소비자소송의 지원) ① 시장은 소비자가 스스로 사업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곤란하여 시장에게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원만하게 소송이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소비자 소송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장 조사·권고 및 공표

제27조(사업자 부당행위에 대한 조사) ① 사업자가 법령과 조례에 반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를 하였거나 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시장은 사업자의 당해 영업활동에 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조사는 소비자단체와 공동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28조(의견진술의 기회부여) 시장은 제21조에 의한 시험·검사나 제27조에 의한 조사를 할 경우 당해 사업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29조(권고 및 공표) ① 시장은 사업자에게 제21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 소비자보호가 요구되는 경우 소비자피해구제절차에 따른 처리·조정 등에 응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권고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시장은 제27조제1항의 조사결과를 「소비자기본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도내 일간지 등에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07. 3. 28, 2008. 6. 16, 2011. 4. 15>

③ 소비자단체는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시험·검사 및 가격 등을 포함한 거래조건이나 거래방법을 조사 분석하여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다만, 전문적인 설비를 필요로 하는 시험·검사인 경우에는 「소비자기본법」 제17조제5항에서 정한 기관에서 시험·검사를 거친후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07. 3. 28, 2008. 6. 16, 2011. 4. 15>

제7장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제30조(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운영) 소비자보호 및 물가안정을 위한 시책등을

자문·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제31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2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기획조정실장, 경제문화국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시의회 의원·학계·법조계·언론계·소비자단체·노동자단체·경제인단체·개인 서비스업 소단체 등의 전문인사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 자로 한다. <개정 2003. 11. 18, 2010. 11. 25, 2013. 8. 1, 2014. 8. 14, 2018. 8. 30, 2019. 6. 25>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책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 사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일자리경제과장으로 한다. <개정 2007. 3. 28, 2008. 9. 24, 2010. 11. 25, 2012. 8. 8, 2018. 8. 30, 2021. 6. 10, 2025. 10. 2>

제32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소비자보호관련 조례·규칙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2. 물가관련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3. 소비자피해구제에 관한 사항
4. 소비자보호 및 물가안정시책에 관한 사항
5. 시 관여요금 또는 수수료·사용료 등의 조정에 관한 사항
6.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청한 사항

② 제1항제5호의 조정대상 요금중 인상후 1년이 경과하고 인상률이 당해연도 소비자 물가 억제목표 미만인 경우와 정부의 원료비 연동제 시행으로 변동된 소비자 요금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33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07. 3. 28>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제34조(실무위원회) ①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경제문화국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유관기관·단체의 실무급 인사와 관계전문가 및 소속 공무원중에서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3. 11. 18, 2014. 8. 14, 2018. 8. 30>

④ 실무위원회는 중요상정안건에 대한 사전협의와 기타 필요한 사항의 협의를 위하여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한다.

⑤ 기타 실무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35조(의견청취 및 자료요청)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위원장은 그 사안에 관계되는 자(관련 전문가를 포함한다)를 참석시켜 조언을 듣거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36조(실비보상)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7. 3. 28, 2008. 6. 16, 2011. 8. 9, 2018. 7. 31>

제3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법규를 준용한다.

제3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시행과 동시에 광명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광명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에 대하여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03. 11. 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 조례에 의한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2007. 3. 28 조례 제15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6. 16 조례 제1588호,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9. 24 조례 제1608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하되, 이 조례에 의한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광명시 소비자 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5항 중 “산업경제과장”을 “기업경제과장”으로 한다.

부칙 <2010. 11. 25 조례 제1731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 조례에 따른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

⑩ 광명시 소비자 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3항 중 “행정지원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제31조제5항 중 “기업경제과장”을 “생활경제과장”으로 한다.

⑪ 부터 ㉓ 까지 생략

부칙 <2011. 4. 15 조례 제1766호,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
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8. 9 조례 제1786호,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 까지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㉓ 까지 생략

⑫ 광명시 소비자 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 중 “광명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⑬ 부터 ⑰ 까지 생략

부칙 <2012. 8. 8 조례 제1862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 조례에 따른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광명시 소비자 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5항 중 “생활경제과장”을 “기업경제과장”으로 한다.

③ 부터 ⑨ 까지 생략

부칙 <2013. 8. 1 조례 제1933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 조례에 따른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⑩ 까지 생략

⑪ 광명시 소비자 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3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안전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⑫ 부터 ⑰ 까지 생략

부칙 <2014. 8. 14 조례 제2005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 조례에 따른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광명시 소비자보호 조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1조제3항 중 “안전자치행정국장·재정경제국장”을 “자치행정국장·고용경제국장”으로 하고, 제34조제3항 중 “재정경제국장”을 “고용경제국장”으로 한다.

⑤ 부터 ④3 까지 생략

부칙 <2016. 9. 26 조례 제2196호, 인용조항 일괄정비를 위한 광명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7. 31 조례 제2372호, 조례 용어순화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18. 8. 30 제2403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⑪ 까지 생략

⑫ 광명시 소비자 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3항 중 “자치행정국장, 고용경제국장”을 “기획조정실장, 경제문화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기업경제과장”을 “지역경제과장”으로 한다.

⑬ 부터 ④0 까지 생략

부칙 <2019. 6. 25 조례 제2492호,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6. 10 조례 제2749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최초 인사 발령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광명시 소비자 보호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5항 중 “지역경제과장”을 “기업지원과장”으로 한다.

② 부터 ④ 까지 생략

부칙 <2025. 10. 2 조례 제3289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광명시 소비자 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5항 중 “기업지원과장”을 “일자리경제과장”으로 한다.

③ 생략